정호용 등 5·18 가해자들 27년만에 다시 법정 세우나

진상조사위, 시민 7명 살해 추가 확인·주남마을 집단살해 가해자 특정
최세창·신우식·최웅 등 12명 내란목적살인·집단살해 혐의 등 고발키로
"공소시효 완성되지 않았다" 판단…당시 작전 수행한 병사까지 첫 고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씨 등 신군부에 대한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목적살인죄 재판 이후 27년만에 5·18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18 당시 투입돼 직접 작전을 수행한 병사까지 고발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31일 열린 제12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호용씨 등 계엄군 12명을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 3건을 통과시켰다.

각각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 내란목적살인에 대한 고발건, 주남마을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고발건, 송암동 집단살해죄 등에 대한 고발건이다. 진상조사위는 고발 대상자의 구체적인 행적을 보완한 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고발장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작성됐다. 이 법은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정호용씨와 최세창 3공수여단장, 신우식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4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된다.

이들은 1980년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 중 전남도청, 광주공원, 광주YWCA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시민 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된 7명은 1997년 5·18 관련 재판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진상조사위가 추가 확인한 희생자다.

5·18진상조사위가 적용한 혐의

▲정호용·최세창·신우식·최웅 → 내란목적살인

▲11공수여단 계엄군 9명 → 집단살해·살인교사 등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호용씨는 작전에 앞서 3공수를 전남도청에, 7공수는 광주공원에, 11공수를 관광호텔과 광주YWCA에 특공조로 침투할 것을 명령했다. 최세창·신우식·최웅씨는 5월 26일 각 대대에 작전을 전파하고 유혈진압을 명령했다.

이들이 교전 및 사상자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살상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했다는 점, 광주 시위를 제압하지 않으면 시위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돼 12·12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에서 내란목적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장의 취지다.

진상조사위는 광주공원에서 사망한 피해자 중 20사단 소속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희생자도 있다는 점에서 추후 20사단 계엄군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작성해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최웅씨를 포함한 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9명은 집단살해(제노사이드)·살인·살인미수·살인방조·살인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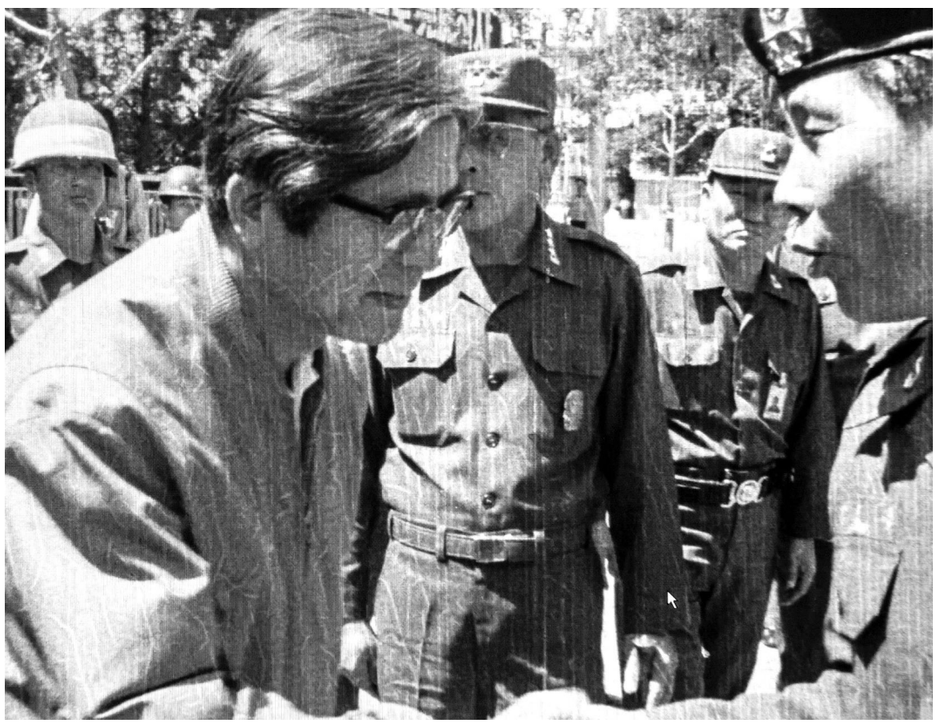

정호용 특전사령관(오른쪽)이 1980년 5월 27일 오전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학살한 상무충정 작전 종료 후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정씨는 전두환씨와 육사 동기(11기)로 5·18 당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장본인 가운데 한명이다. 〈광주일보, 5·18 기록관 공개영상 촬영〉

이들은 1980년 5월 23~24일 외곽봉쇄작전 중 주남마을, 송암동 일대에서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1공수는 5월 23일 오전 9시께 광주 외곽에서 관을 구해오기 위해 화순으로 향하던 마이크로버스(14명 탑승)가 접근하자 탑승자들이 항복의사를 표시했음에도 10여분 동안 무차별 발포했다.

이 때 11공수 62대대의 한 하사관은 버스 내에 진입해 10여구의 부상자·시신을 확인사살하고, 인근의 목격자까지 조준사격했다. 11공수 여단본부 소속 장교(소령)는 버스에서 연행해 온 민간인 두 명을 두고 부하에게 "처리하고, 묻어주라"고 명령해 살인을 교사했으며, 이에 62대대 소속 병사(일병)는 두 민간인을 직접 살해했다.

11공수는 또 24일 주남마을에서 송정비행장으로 이동하다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오인교전을 했고, 이후 송암동 일대 마을 수색 작전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11공수 62대대의 하사관(상사)은 포승줄에 묶인 시민의 머리와 등을 대검으로 찌르고 총을 쏴 살해했으며, 11공수 63대대 소속 하사관(상사)은 산자락 마을에 살던 비무장 민간인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 확인사살까지 했다.

최웅씨와 62대대 5·6지역대장, 63대대 7지역대장은 부하들이 집단살해를 범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기를 분배하는 등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송암동, 주남마을 사건 가해자를 특정한 데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최세창·신우식·최웅씨는 1997년 재판 당시 검찰이 5·18 현장 지휘관을 기소 대상에서 배제한 데 따라 지금까지 5·18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최세창씨의 경우 12·12 사태 당시 반란 가담, 상관 살해 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받았다. 정호용씨는 상무충정작전 중 18명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8개월만에 사면됐다.

진상조사위는 각 죄목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련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내란목적살인, 집단살해죄 등은 헌정질서파괴범죄로서 관련법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진상조사위원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 3명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고발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살인·강간죄 등은 1995년 공소시효가 종료됐으며,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무장 병원' 개설, 엇갈린 법원 판단

1심 "법인 개설 관여 처벌" 징역형…2심 "운영까지 개입해야" 무죄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앞세워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이 엇갈렸다.

1심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개설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외형만 갖추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반면, 2심은 의료기관 운영에까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실질 대표 A(56)씨와 이사장 B(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허위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 전남도에 설립허가를 받아 순천시에 의료기관(한방병원)을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209회에 걸쳐 비용을 청구해 총 44억63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 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면서 "환자유치를 담당하는 브로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다진료,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등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했다는 정황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들이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한방병원의 개설 운영에 나섰다고는 단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폐지 학과 교수 재배치 노력 없는 면직 무효"

광주고법 "학교법인, 미지급 임금 등 지급하라" 판결

대학이 폐과한 학과의 교수를 타 학과로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 모대학 전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1억 8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2000~2017년, 2020~2022년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근무했다.

이 대학 학과교무위원회(교무회)는 2014년, 2015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24개 학과 중 4개 학과에 대해 모집을 중지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무회 4개 학과 소속 13명 교원에 대해 소속 변경 대상이 되는지 등을 심사했고 11명이 기준 점수에 미달돼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무회는 A씨를 포함한 11명의 교수에 대해 급여 20%를 감축하고 전과에 따른 자기 계발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소속학과 변경을 진행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아 혼자 면직 처리되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급여감축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리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A씨를 면직한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흥식 전 5·18부상자회장 정신적 손해배상 일부 승소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문흥식(64)씨가 정부를 상대로 5·18유공자 정신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판사 윤봉학)은 문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용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1980년 5월 계엄군의 폭행으로 머리, 오른손 중지와 검지 등에 상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문씨는 3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으로 유공자를 인정받는 인우보증 방식으로 5·18 유공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에 선출된 문씨는 2021년 6월 광주시 학동 4구역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미국으로 달아났다 귀국한 뒤 체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